

국방경찰행정연구소 규정(4-2-15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라 칭하며,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국방 및 경찰분야 발전에 필요한 연구 기반군축 및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‘건양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3-6-4)’에 의하여 설치된 건양대학교 부설 국방경찰행정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방(안보) 및 경찰(치안)관련 연구 및 제안
2. 국방(안보) 및 경찰(치안)관련 분야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
3. 국방(안보) 및 경찰(치안) 정책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 연구프로젝트
4. 주기적인 국방(안보) 및 경찰(치안)관련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
5. 국방(안보) 및 경찰(치안)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시행
6. 현장방문 연구 활동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 직) 연구소에는 연구부 그리고 기획부를 둔다.

제5조(임원 및 임기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, 간사 및 각 부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 연구원을 둔다.

- ②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간사는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연 구 원

- 제5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, 위촉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중이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4 장 운 영 위 원 회

- 제6조(구성 및 회의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학교 지원,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 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제10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이 규정은 시행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